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21-650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피 청 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심 판 청 구 일 2021. 5.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1. 4. 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지사의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1. 1. 20. 영암군수에게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청구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2021. 4. 14.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전라남도지사가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1. 8.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